

제4기
산업융합촉진 음부즈만
분야별 제도개선
건의 현황 ('21~'23)

- 디지털서비스 분야 -



CONTENTS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분야별 제도개선 건의 현황 ('21~'23)

※ 해당 자료는 '21~'23년 內 소관부처에 개선 건의 및 회신 받은 내용과, '23년도 3월 소관부처를 통해 이행현황을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 디지털서비스 분야 (8건)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절차 명확화
-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의 상위레벨 신설
- 전자서명인정사업자 평가 비용의 합리적 책정
-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적용기간 연장
- 메타버스 서비스의 단말장치 안전기준 제도화 방안 마련
- 메타버스 저작물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 특수교육 교원 종류에 ICT 전문교사의 자격 추가
- 초·중·고 가상현실(VR)기반 진로체험 프로그램 인정 방안 마련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절차 명확화

디지털서비스 분야

애로내용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신속한 계약 체결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복잡한 절차 등으로 계약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건의결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평가를 통해 기관의 사업특성 및 수요 등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에 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한 기본제안서를 포함하고, '적격'인 경우 즉시 협상

- ①, 제안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안요청
- ②, 할 수 있도록 평가절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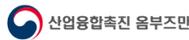
개선/파급효과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고시) 개정 예정(~'2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달청

- 계약절차 간소화에 따른 기업의 비용 절감 및 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한 계약 활성화에 따른 클라우드 산업 성장 기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의 상위레벨 신설

디지털서비스 분야

애로내용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는 국가·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성을 검증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 제한으로 CSAP 인증제도의 실효성 저하

건의결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내부 업무시스템에 대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은 행안부, 국정원 소관으로 민간 클라우드 공공 이용 확대와 이를 위한 보안인증 상위레벨 신설 방안 등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한 방안 마련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예정(~'2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정사업자 평가 비용의 합리적 책정

디지털서비스 분야

애로내용

개정 전자서명법 기준으로 전자서명인정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민간 평가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하나 매년 전자서명인정사업자를 유지하기 위해 평가기관 평가료 공시 기준 매년 1억3천~7천만원에 해당하는 고액의 평가비용을 부담해야 함

건의결과



현재 평가 신청 시 평가기관과 사업자 간 충분한 계약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보안원의 경우 평가 신청 시 협의를 통해 수수료 일부 조정 가능함을 유권해석(21.8)

* 전자서명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적용기간 연장

디지털서비스 분야

애로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경우, 해당분야에서 오랜 기간(10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됨에 따라 회사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 과중

건의결과



유사·중복 점검제도의 부담 해소, 인증 의무대상자 이행 기한 연장, 유사 시 비대면 원격 심사 병행 등을 통해, 기간단축 및 인증 비용절감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1.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선/파급효과



- 인증 비용 최대 50% 절감 예상 및 인증 취득기간 약 34% 단축 예상
- 관련 업무, 비용 부담 완화로 정보보호 R&D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대

메타버스 서비스의 단말장치 안전기준 제도화 방안 마련

디지털서비스 분야

애로내용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정 정의 및 관련 기준이 없어, 메타버스 서비스가 게임물로 정의되고 메타버스 특성에 맞지 않는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확장에 어려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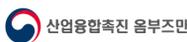
건의결과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메타버스'와 '일반적인 게임물'을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 '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예정('23. 上)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예정('2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메타버스 저작물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서비스 분야

애로내용

메타버스 특성상 현실의 데이터 기반 이미지 또는 영상을 활용하는 서비스 활용 수요가 다수 있으나,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저작권 관련하여 명확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에 어려움 발생

건의결과



메타버스 상 저작물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메타버스·NFT 저작권 쟁점 연구' 수행('22. 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올바른 메타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수행(~'23. 9)

* 메타버스 상 저작물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간 예정(~'23. 下)

개선/파급효과



- 메타버스 저작권, 상표권 등에 대한 법적인 이슈 선제적 대응 가능
- 메타버스 저작권·상표권 관련 소송 발생 정도 감소에 따른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 기업의 재정적 부담 완화
- 메타버스 저작물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독창적인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관련 신시장 창출



특수교육 교원 종류에 ICT 전문교사의 자격 추가

디지털서비스 분야

애로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이 별도로 시행 중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ICT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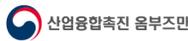
건의결과



교원 이외에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참여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률 유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초·중·고 가상현실(VR)기반 진로체험 프로그램 인정 방안 마련

디지털서비스 분야

애로내용

초·중·고 진로체험의 경우 가상현실(VR)기반 체험과 견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에듀테크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건의결과



진로교육법 제2조는 특정 형태의 진로 체험을 인정 또는 불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법령에서는 향후 사회·교육 환경 변화 등의 변동 가능성을 염두하여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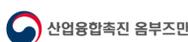
* 진로교육법 제1조, 제2조

소관부처: 교육부

개선/파급효과



- 공교육 현장에 학생건강검사 결과 데이터(키, 몸무게)를 활용한 AI 기반 교육 서비스 도입 활성화



※ (참고) 산업융합촉진 음부즈만에서는
융합·신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규제개선 확정 건에 대해서도 이행 현황 및 기업 애로해소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애로해소가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문의 및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1670-9050" / "hyelim0507@kitech.re.kr"으로 문의
또는 <https://www.oico.kr/>로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